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법제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
·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
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(4급 1명, 7급 1명) 중 1명(7급 1
명)은 증원하고, 1명(4급 1명)은 법제처 정원 1명(4급 또는 5급 1명)의 직
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,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
법적 검토·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(4급 또는 5급
1명, 5급 2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2. ~ 12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재정부”를 “재정경제부”로, “중소벤처기업부”를 “중소벤처기업부, 기획예산처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38명”을 “3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34”를 “23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3”을 “23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18”을 “222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17조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
1. 기획조정관 1개 센터	1명
2.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	1명
3. 사회문화법제국 1개 법제관	1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
제9조(경제법제국) ①·② (생략)	제9조(경제법제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<u>기획재정부</u> 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부, 국토교통부, <u>중소벤처기업부</u> , 국가데이터처, 지식재산처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 <u>재정경제부</u> ----- ----- ----- <u>중소벤처기업부, 기획예산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	제15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,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38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9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4</u>	<u>238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33</u>	<u>237</u>	+4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18</u>	<u>222</u>	+4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9